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교수회 규정

2022. 12. 14.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3조,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교수회(이하 "법·행정대 교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법·행정대 교수회는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소속인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3조 (권한)

법·행정대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교수회 회장 및 평의원 선출
2. 학장 후보 선출
3. 교수회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행정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임원)

- ① 법·행정대 교수회에는 회장 1인과 평의원 1인을 임원으로 둔다.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하며, 동수 득표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③ 평의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 ④ 회장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⑥ 회장 또는 평의원 직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후임자를 선출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⑦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행정대 교수회 사무를 총괄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 전체교수회에서는 평의원이 된다.
- ⑧ 회장과 평의원은 대구대학교 교수회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⑨ 회장 또는 평의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학칙을 위반하였을 시는 총회에서 불신임 또는 소환을 결의할 수 있다.

제5조 (총회)

- ① 법·행정대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학장이 요청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실제 출석회원(이하 "참석회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위임장은 재적회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⑤ 개회 이후라도 참석회원 수가 재적회원의 4분의 1 미만이 되면 자동 유회된다.
- ⑥ 재적회원 수에 휴직 중인 회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학장후보 선거)

- ① 학장후보는 현임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학기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학장후보 선거의 관리는 법·행정대 교수회 임원진이 담당한다.
- ③ 학장후보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의 법·행정대 교수회 회원 전원이 가지나, 선거장소에 출석했을 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학장후보 피선거권은 법·행정대 교수회 회원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갖는다.
- ⑤ 학장후보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시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경우에는 연장자(일자 포함)를 당선자로 한다.
- ⑥ 법·행정대 교수회장은 선거일 익일까지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공고하고, 선출된 학장후보를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학장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 동안의 후임자를 조속히 선출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 ① 이 규정의 개정은 2개 이상 학과의 회원 7인 이상, 또는 임원진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규정 개정안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22.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